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09 발의연월일: 2024. 7. 22.

발 의 자:김재원·김준형・박은정

이해민 · 서왕진 · 신장식

정춘생 · 강경숙 · 정성호

박 정・서영석・조 국

민형배 • 이상식 • 민병덕

윤종오 • 윤종군 • 신정훈

윤준병 · 임오경 · 김선민

이재강 · 김영배 · 부승찬

염태영 · 김준혁 · 서미화

김 윤·한창민·박지혜

전종덕 • 황운하 • 이학영

이용선 · 용혜인 · 이병진

차규근 • 양문석 • 양부남

추미애 • 정진욱 • 김병주

안태준 · 김윤덕 · 권향엽

강득구 의원(46인)

제안이유

대한민국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정치적인 이유 로 특정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던 바 있음(이하 "블랙리스트 사태"라 함). 이로 인하여 많은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창작의 자유의 제약과 더불어 예술활동에 위협을 느꼈음.

이념적 기준으로 예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 사회는 블랙리스 트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를 기억하여 앞으로는 예술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고 모든 예술인들이 평등하 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를 입은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피해구제, 명예회복 및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 법률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문화예술 환경을 구축하고,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제도·정책·프로그램·행정 등의 수단 또는 강요·회유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는 등의 행위 를 통하여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들로 정의함(안 제2 조).

- 다. 위원회를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한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에 요구되는 자격 및 능력,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안 제9조).
- 라.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간 활동하도록 하되,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마. 위원회는 직권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을 조사함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 바. 피해자의 명예회복, 창작 환경 회복 지원, 창작지원금, 심리상담 등 지원, 법률지원, 금융거래 관련 협조,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
- 사.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특례를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보칙 및 벌칙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문 화예술인의 자유와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법 · 제도 · 정책 · 프로그램 · 행정 등의 수단 또는 강요 · 회유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사찰 · 감시 · 검열 · 배제 · 통제 · 차별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들을 말한다.
- 2. "피해자"란 2008년 2월 25일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하여 물적·정신적·사회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재발 방지, 피해자 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 2.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4. 명예를 회복할 권리
- 5. 창작지원·생활지원·심리치료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 6. 문화예술계의 창작 생태계 회복 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 자의 권리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 (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 상조사, 재발 방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조사위원회 제1절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조사위원회의 설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피해자의 인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
 -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 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4. 피해 문화예술인의 인정과 지원 정책의 수립

- 5.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 · 의결에 관한 사항
- 6.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7.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문화예술계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 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사람
 - 4. 문화예술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또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배상 및 보상업무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6.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제10조(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38조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 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 2.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 4. 제13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정당의 당원
 -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 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 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직접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퇴직한다.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조사대상자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5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 ④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 1. 진상조사 및 피해자인정 소위원회
- 2. 제도개선 및 피해자지원 소위원회
- 3 조사보고서 발간소위원회
- ② 소위원회에 소위원장을 두며,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위원회 지원부서)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위원회 지원부서(이하 "지원부서"라한다)을 둔다.
 - ② 지원부서는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부서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국가기관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국가기관등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진상규명조사

- 제21조(진상규명조사) 위원회는 직권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8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22조(조사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③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 1.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 3.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 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 제24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 제25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 5.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하는 실지조사
 -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한다.
 - ③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 ④ 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 조까지 및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등 확인된 사실에 대한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기록(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록등"이라 한다)의 열람, 등사, 사본의제출요구 등(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 한다)을 통한 조사를 할수 있다.
- ⑧ 위원회가 제7항에 따라 조사기록등의 열람등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6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 제27조(피해 및 명예회복)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공식적 사과
 - 2. 피해자의 심리상담 · 치료 지원
 - 3. 문화예술 분야 국가기관등의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 의무 교육 실시
 - 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사회적 기억 및 기록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실시
 - 5. 표현의 자유 예술 작품 공모 및 실천 프로젝트 지원 사업 추진
 - 6. 표현의 자유 예술 주간 행사 개최
- 제28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피해자인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으 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인정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인정신청인이 피해자에 해당되는 지 등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경우 피해자인정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피해자 해당 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인정 신청·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29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창작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

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30조(창작 환경 회복 지원) 국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훼손된 창작 환경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31조(창작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 하 "창작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1. 창작지원금: 피해자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비용
 -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후유증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② 창작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창작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2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5조(재단 설립 등) ① 국가는 제27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문화예술 계 블랙리스트 사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적으로 기억하며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의 재단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36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35조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 제37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 정대리인이 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38조(조사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 법 등 후속 조치 권고안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 확정하고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와 그 관계자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0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제41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창작지원금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 다.

제5장 벌칙

-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9조를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 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 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 동을 한 사람
-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고 허 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 나 방해한 사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무총리는 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위원이 전부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을 포함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